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90
----------	-------

발의연월일 : 2025. 9. 23.

발 의 자 : 이훈기 · 박지원 · 이주희
김 윤 · 박해철 · 정진욱
최민희 · 채현일 · 이재강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1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람

제166조제3항제5호 중 “제161조제4항제2호가”를 “제161조제4항제2호 및 제2호의2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 ③ (생략)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람</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66조(과태료) ① . ② (생략)	제16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5. ----- ----- -----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u>제161조제4항제2호가</u>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u>제161조제4항제2호 및 제2호의2가</u>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